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2024.02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

서병호 금융혁신연구실장

# 목차

01



오픈파이낸스 정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

02



오픈파이낸스의  
경제학

03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01

02

03



오픈파이낸스의 정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

## 1-1. 국내 오픈뱅킹 정의

● 국내 오픈뱅킹 =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이 **이체** 또는 데이터 조회 기능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표준화된 API 중계센터(오픈뱅킹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구현

- (참가기관) 은행, 협동조합(중앙회),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핀테크기업(데이터 제공) 등 계좌 이체 또는 데이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이용기관)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등 API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
- (기능) **출금 · 입금이체**, 잔액 · 거래내역 · 계좌실명 · 송금인정보 조회, 사용자인증, 관리에서 시작
  - 참가업권 확대에 따라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험, 대출 · 리스 관련 데이터 조회 기능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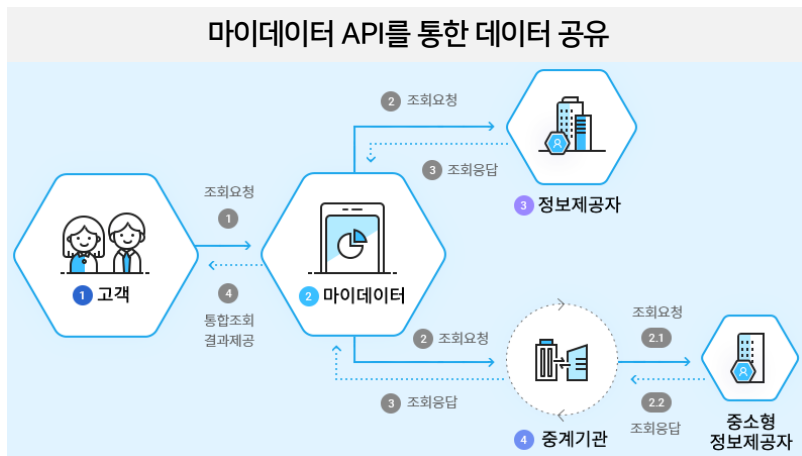
오픈뱅킹센터를 통한 출금이체 구현



자료: 금융결제원

## 1-2. 국내 마이데이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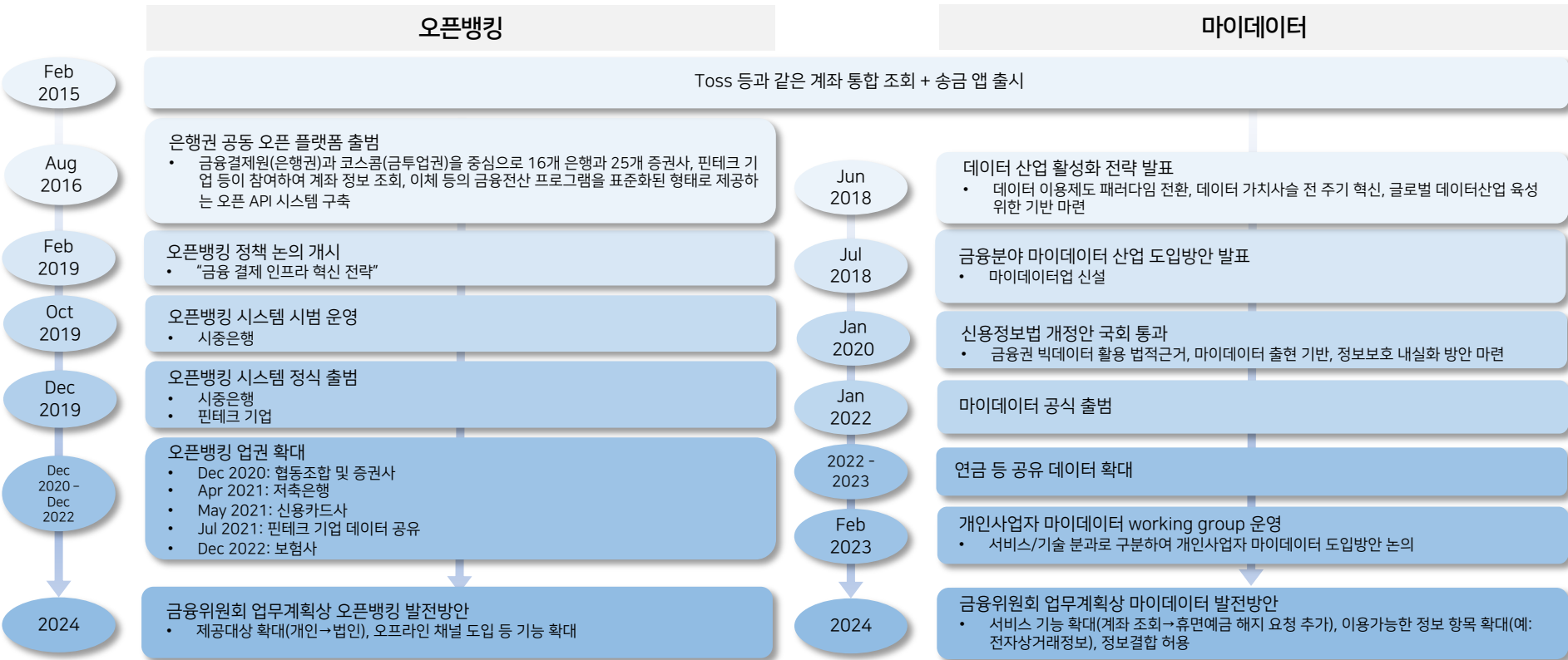
-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 (전송요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마이데이터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금융회사 등에게 **요구**하고, (전송 효율성 제고) 전송은 **표준화된 API**로 구현
- 마이데이터업자는 금융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금융상품 유통**(광고, 자문 등), 데이터 공유 및 판매를 통한 **데이터 유통**을 통해 금융중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01 오픈파이낸스의 정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

## <참고> 국내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도입 · 확대 연혁



## 1-3. 해외 오픈뱅킹 · 오픈파이낸스 정의

- 우리나라 오픈뱅킹은 해외 오픈뱅킹, 우리나라 오픈뱅킹(지급) + 마이데이터는 해외 오픈파이낸스 (Open Finance)의 정의와 부합함.
  - (오픈뱅킹) 정보주체 주도의 은행 관련 데이터 공유 + 지급
    - ① “정보주체가 개시하는, 동의에 기반한 은행 관련 데이터의 공유”
    - ② 오픈뱅킹을 시행한 많은 국가는 지급 관련 기능의 개방을 포함
    - BCBS(2019) : Open Banking is “the sharing and leveraging of customer-permissioned data by banks with third party developers and firms to build applications and services.”
    - OECD(2023) : Open Banking “is generally well understood as the practice of sharing banking data via standardised and secure interfaces at the request of clients.” In the UK, ... , “it also includes the ability of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to initiate payments on behalf of a customer, with that explicit customer’s consent.”
  - (오픈파이낸스) 정보주체 주도 데이터 공유범위의 확대
    - 오픈뱅킹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정보주체가 개시하는, 동의에 기반한 금융 관련 데이터의 공유”
    - European Union(2022) : “Open finance refers to the sharing, access and reuse of personal and non-personal data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a wide range of financial services.”
    - OECD(2023) : “Open Finance can be described as an extension or evolution of Open Banking.” ... “it expands data access and sharing to data sources beyond payment/transaction data, while it also includes other areas of financial activity (e.g. insurance).”

## <참고> 국내외 오픈뱅킹 · 오픈파이낸스 주요 연혁

### ● 미국(1997)→싱가포르(2016)→영국 · EU(2018)→한국 오픈뱅킹(2019)→한국 마이데이터(2020)

-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아이디, 비밀번호)의 데이터 집적 서비스 회사 발달  
→ 개인정보 유출 위험, 해킹과의 구분 난해, 데이터 제공기관에 따라 다른 코드 필요 → API 형태의 데이터 교류 논의 시작

- 1997 ○ 미국, Microsoft, Intuit 등이 개방형 API 형태로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해 FDX(Financial Data Exchange) 설립하여 표준화  
→ BOA, Chase, Citi 등 230여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 (2023.4. 기준 고객 계좌 5,300만개, API 요청량 360억 건/월)
- 2016 ○ 싱가포르, 오픈뱅킹 지침 및 API 안내서 발표
- 2018 ○ 1월 영국, 오픈뱅킹 시행하면서 9대 은행의 오픈 API 도입 의무화, 다른 금융회사들은 자발적 참여 (2022.5. 기준 90개 금융회사 참여)  
1월 EU, 지불결제 서비스 지침 개정안(PSD2) 시행으로 은행 API 이용 보장, 자발적 참여 (2022.9. 기준 2,300개 금융회사 참여)
- 2019 ○ 12월 한국, 오픈뱅킹 공식 출범
- 2020 ○ 8월 한국, 데이터 3법 개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작
- 2022 ○ 12월 싱가포르, SGFinDex(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 세계 최초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 도입, 금융+공공데이터 자발적 참여  
1월 한국,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모든 금융기관의 무적 참여
- 2023 ○ 2023.12. 기준 651개 정보제공기관 참여, 69개 마이데이터 업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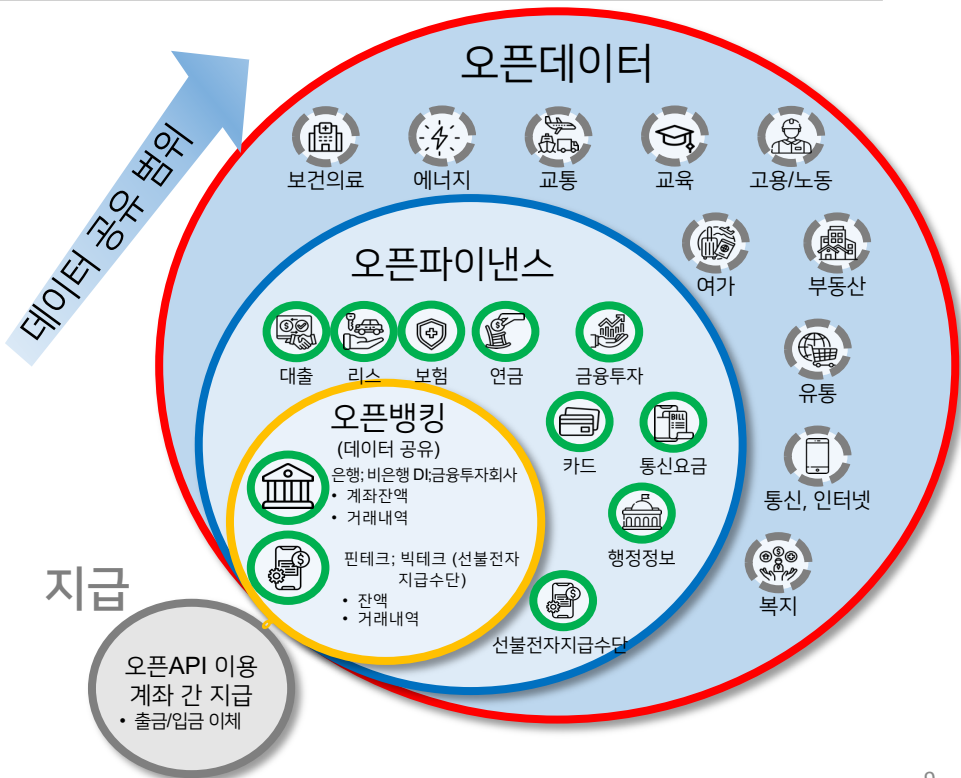


## 1-4. 국내 오픈뱅킹 · 오픈파이낸스 현황 평가

### 데이터 공유

- 우리나라는 `19년 오픈뱅킹, `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과 데이터 공유 표준화로 오픈파이낸스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
  - EU는 PSD2로 오픈뱅킹을 도입
  - EU는 GDPR로 금융분야를 포함한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를 도입했으나, 제3자에게 데이터 전송에 있어 즉시성과 API 표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은행 밖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2023년 금융 데이터 접근성 관련 신규 법령안 ("Proposal for ... a framework for Financial Data Access ...")이 제출됨.

-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오픈데이터 생태계가 확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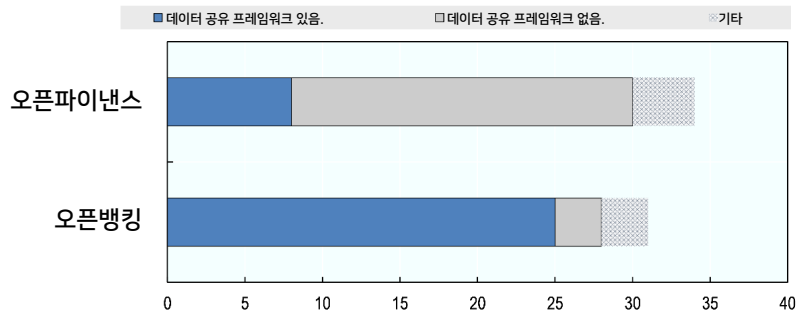


## <참고> 해외 오픈파이낸스 도입 현황

- (도입 현황 1) 대부분 OECD 회원국은 오픈뱅킹을 도입했으며, 오픈파이낸스는 대부분 도입하지 않음.
- (도입 현황 2) 대부분 OECD 회원국은 데이터 공유 확대 관련 작업 중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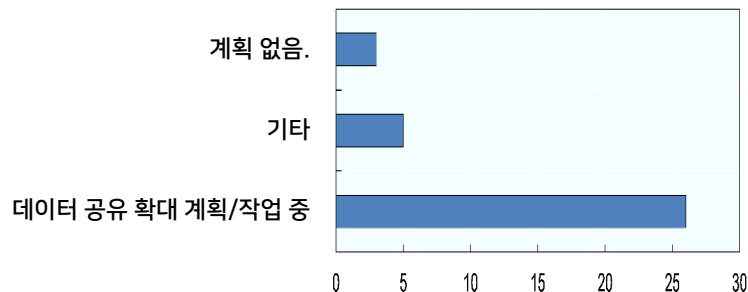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OECD(2023)

데이터 공유 확대 계획 존부

(단위: 개)



자료: OECD(2023)

01

02

03

## 오픈파이낸스의 경제학

## 2-1. 데이터의 특성

- 데이터는 현대 사회의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이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생산
- 데이터의 특성은 사회 내 데이터의 효율적인 배분을 쉽지 않게 만듦.
  - (비경합성(non-rivalry)) 데이터는 한 번 소비된 후, 다른 자에게 이동하여 다시 소비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음.
  - (데이터 이전의 낮은 비용) 데이터의 제3자 전송은 다른 생산요소의 이동 대비 낮은 비용을 수반함.  
⇒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privacy costs가 허락하는 한 효율적으로 유통될 필요
  - (데이터 생산의 Economies of Scope) 데이터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의 부산물(by-product)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데이터 생산에 유리
  - (데이터 생산의 Economies of Scale)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커질수록 평균 생산비용이 낮아짐.  
⇒ 데이터 생산은 소수 생산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큼.
  - (데이터 이용의 비용 및 외부효과) 데이터 이용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비용(privacy costs)을 야기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 유통이 늘어날수록 “나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정보가 생산”되는 외부효과가 발생

## 2-2. 데이터 특성이 야기하는 경제적 마찰

- (비효율적인 데이터 배분) 데이터 이용 · 수익창출 · 전송 · 수정 · 파괴 등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이 회사에 귀속되면 파괴적혁신(creative destruction)을 우려한 회사가 데이터 유통보다 자사내 보관을 선택하여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Jones and Tonetti, 2022).
  - 데이터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고, 다량 · 다종의 데이터 결합은 단일 데이터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기한 마찰(friction)이 부재하더라도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상품 · 서비스 제공 시장의 경쟁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인 데이터의 배분이 어려움.
- (경쟁도 저하) 데이터의 유통이 회사 간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 상기한 문제로 인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회사의 경쟁우위가 지속 강화되어 경쟁도를 저하
- (Privacy costs 증대) 데이터의 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privacy costs가 증대

## 2-3. 오픈파이낸스의 해결책

- (비효율적인 데이터 배분)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제공하는 제3자로 본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

⇒ 데이터 배분 효율성 제고

- (경쟁도 저하) 경쟁을 촉진하는 신규 진입자가 데이터 전송과 직접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

⇒ 경쟁 촉진

- (Privacy costs 심화) 소비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부여하여 privacy costs를 완화

⇒ 소비자 정보 결정권 제고

## 2-4. 오픈파이낸스 정책 설계시 고려사항

기본 정책방향	고려사항	정책대응
데이터 배분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서비스의 <u>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u>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파이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분배적 효과/반경쟁행위를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 및 핀/빅테크간 <u>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 ground)</u>이 조성되면 후생을 저해(He et al., 20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공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등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공정한 보상</u>이 없는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소투자(under-investment) 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파이낸스 과금 체계 지속 검토</li> </ul>
경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자산관리 앱 등을 통한 <u>경쟁 촉진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적인 경쟁 촉진 정책,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기능 강화, 마이데이터업 활성화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송요구권” ≠ <u>“전송 활성화”</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명데이터 제공 의무 or 공정한 데이터 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데이터산업 내 <u>지나친 시장지배력</u>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지배력 모니터링</li> </ul>
소비자 정보 결정권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사이버보안 리스크</u>가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보안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전송 <u>외부효과에 따른 privacy costs</u> (Acemoglu et al., 20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 데이터 공유 범위 조정 등으로 외부효과 완화</li> </ul>

01

02

03

##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 3-1.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 데이터 배분 효율성 제고
2. 경쟁 촉진
3. 소비자 정보 결정권 제고

### 데이터 공유 확대

- 전송요구권 행사 정보주체의 확대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기능 강화

- 오픈뱅킹 관련 기능 강화
- 마이데이터 관련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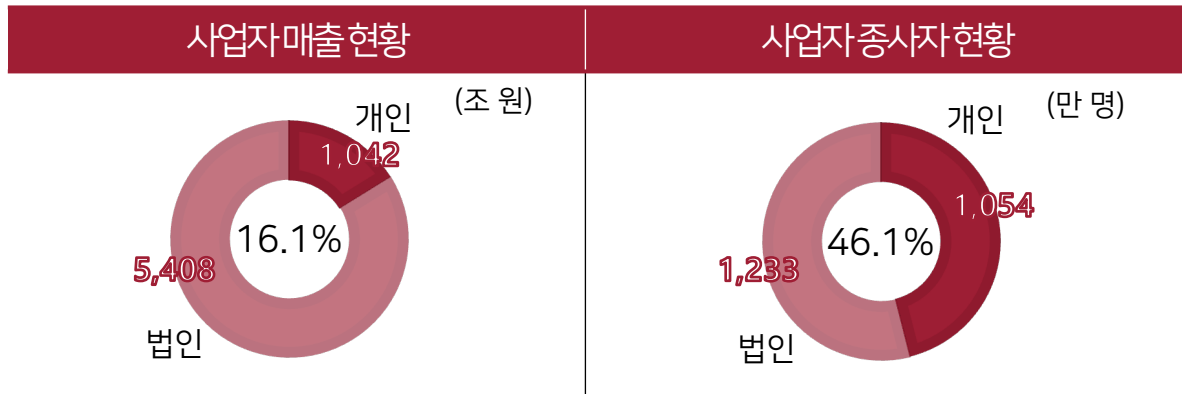
### 소비자 권리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 지나친 시장지배력 강화 방지

## 3-2. 전송요구권 행사 정보주체의 확대

- 장기적으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전송요구권 확대 검토
  - 전송요구권 행사 정보주체가 확대되며 데이터 전송의 외부효과, 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등은 유의
- 우선,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 개인사업자의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 → 개인사업자의 경영관리 효율성 개선 및 업무시간 절감
  - 연평균 130만개 창업기업 관련 결제정보, 매출처 정보 등을 이용한 대출심사 → 포용금융 확대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기본통계('21년말 기준)

### 3-3. 오픈뱅킹 관련 기능 강화

- **오픈뱅킹의 지급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차별성을 제고**

- (한도 확대) 현행 1회 200만 원, 1일 1,000만 원 → 확대 검토
- (기능) 예약이체, 고정금액 자동이체, 변동금액 자동이체(variable recurring payments)
- (선결 조건) 인증 및 금융보안 강화 등이 선결될 필요

- **마이데이터 미적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기능 제공**

- 법인 대상 오픈뱅킹은 횡령 등 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데이터 공유 기능부터 구현 검토

- **오프라인 오픈뱅킹 검토**

- (장점) 경쟁 촉진, (지점 접근성 낮은 지역) 금융접근성 제고
- (단점) 고객 니즈 낮음(2020년 서베이), 금융사기 가능성 및 피해 증가, 지점 축소 유인 강화
- (검토 과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 고객 확인 및 동의, 은행대리업 등과 상충 가능성  
\* 은행 대리업이 오프라인 오픈뱅킹 지급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경우를 상정

## 3-4. 마이데이터 관련 기능 강화

### ● 금융회사가 주요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API를 통해 공유하도록 유인

- 영국 Open Banking은 은행이 ATM, 지점, 개인 당좌계좌, 기업 당좌계좌, 중소기업 신용카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정보를 API를 통해 공유하도록 함.
- 소비자 접근성이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과 계약 또는 스크린스크래핑 등이 없이 비교분석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

### ●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검토

- (장점) 경쟁 촉진, (고령층) 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권고·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제고
- (단점)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검토 과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고객 확인 및 동의

HSBC Small Business Loan API 호출 결과(좌: 홈페이지 안내, 우: API 결과 요약)

#### For information about our HSBC Kinetic Small Business Loan

Small Business Loans available from between £1,000 and £25,000 with repayment terms of between 12 months and 10 years. 11.3% Representative APR for loans up to and including £10,000. 7.1% Representative APR for loans over £10,000. See 'Representative Examples' under the 'Important Information' section below. Lending is subject to credit status. Terms and conditions apply. Missed repayments can affect your credit rating.

The interest rate is fixed for the term of the loan and agreed at the outset. Interest is charged throughout the full loan including any month when a repayment is not made. An arrangement fee. Repayments to be made by Direct Debit.

No requirement to open or maintain an HSBC Business Current Account unless a debenture or fixed charge over book and other debts is required. Security may be required – each case is considered on its individual merits. If security is required, an administration fee will be payable.

API

Product Name	Small Business Loan
Product Description	A fixed rate, fixed term loan, which provides finance for a variety of business purposes.
Sales Access Channels	"Branch", "RelationshipManager", "Online", "CallCentre"
Features and Benefits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신청 수수료, 중도상환 가능 여부 등
Term	1~10 years
Representative APR	[1,000, 10,000]: 11.3%, [10,001, 25,000]: 7.1% 등
비고	Representative (APR Representative) is the advertised rate (or a lower rate) we reasonably expect at least 51% of people who are accepted for and enter into the loan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advertising or marketing will pay.

## 3-5. 지나친 시장지배력 강화 방지

- **마이데이터업이 성숙하면서 데이터 집중도는 더 커질 수 있음.**
  - 데이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경쟁 촉진과 상충**
-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익명데이터 공개 의무) 일정 규모 이상 마이데이터 업자는 중소 마이데이터 업자가 실제 소요비용을 지불하면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
    - \* Martens et al.(2020)은 정보주체의 데이터 전송 유인이 약할 경우 후생을 고려하여 제3자에 대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mandatory B2B sharing”)를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
  - (데이터 거래 관련 규율) 데이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책 개입
- **데이터 활용 확대에 의한 불공정경쟁, 반경쟁,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을 지속 모니터링**
  - (불공정경쟁) 마이데이터업자의 금융상품 유통 관련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금융중개로 인한 과실 배분을 왜곡하거나, 금융상품 기획·생산에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 (반경쟁) 마이데이터업을 통해 소비자 선호 파악 및 타사 금융상품 조건 비교가 매우 용이해지면 금융상품 조건을 동적(dynamic)으로 조정하는 등의 반경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 (소비자 편익) 가격차별로 인한 분배적 효과, 금융상품 유통 비용 상승 등으로 마이데이터의 과실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을 가능성

## 3-6. 오픈뱅킹 등 지급 관련 소비자 권리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자 지급서비스는 빠르게 활성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 강화는 지연
- 주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PSD2, PSD3 등에서 논의 중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
  - (개정안) 전자금융사고를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이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로 확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입증 책임 부담(김홍식, 2022)
  - (PSD2) 지급지시 관련 전자금융사고시 계좌기반 지급서비스제공자(은행 등)의 우선 반환 후 지급서비스제공자 청구, 자금수취인이 요청한 출금이체에 대한 8주 이내 반환 요청, 미승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책임 한도(이보미, 2020)
  - (PSD3 및 UK PSR(2023)) 사기로 인한 승인된 지급에도 특정 경우(PSD3) 또는 전부(PSR(2023)) 우선 반환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계좌기반 지급서비스제공자(은행 등)-기타 지급서비스제공자(핀테크 등), 출금 기관-입금 기관간 반환 및 입증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
- 오픈뱅킹 등 금융회사 제3자를 통한 지급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진입·건전성·영업·퇴출규제 및 감독 개선방향도 논의할 필요

##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Ali Makhdoumi, Azarakhsh Malekian, and Asu Ozdaglar. 2022. "Too Much Data: Prices and Inefficiencies in Data Markets."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14 (4): 218-56.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9. "Report on Open Banking an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 European Union. 2022. "Report on Open Finance."
- Farboodi, Maryam, and Laura Veldkamp. 2021. "A Growth Model of the Data Economy." NBER Working Paper 28427.
- He, Zhiguo, Jing Huang, and Jidong Zhou. 2023. "Open Banking: Credit Market Competition When Borrowers Own the Dat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7 (2): 449-74.
- Jones, Charles I., and Christopher Tonetti. 2020. "Nonrivalry and the Economics of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10 (9): 2819-58.
- Martens, Bertin, Alexandre de Streel, Inge Graef, Thomas Tombal, and Néstor Duch-Brown. 2020. "Business-to-Business Data Sharing: An Economic and Legal Analysis." JRC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2020-05.
- OECD. 2023. "Shifting from Open Banking to Open Finance."
- Payment Systems Regulator. 2023. "Fighting Authorised Push Payment Fraud: A New Reimbursement Requirement."
- 김홍식. 202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5 (3): 127-59.
- 이보미. 2022.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금융브리프* 29 (8).

# 감사합니다.

2024.02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  
서병호 금융혁신연구실장